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0. 4.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내 주요 유료 관광지의 무료 입장(관람) 대상에 관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담양군 근무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 선순환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의 무료 입장(관람) 대상 확대(안 제1~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4. ~ 10. 10.(7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는 무료관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의 개정)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5]

무료관람 대상자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	1. 국민,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별표 3]

입장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	1. 국민,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담양군 소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의 개정)

[별표 5]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	1. 국민,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별표 3]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	1. 국민,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	1. 국민,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무료관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u>	제7조(무료관람) ① <u>별표 5</u> ----- ----- -----.
1. <u>국민, 외교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u>	<u><삭 제></u>
2.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u>	<u><삭 제></u>
3. <u>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신분증 소지자)</u>	<u><삭 제></u>
4. <u>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u>	<u><삭 제></u>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삭 제></u>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u><삭 제></u>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	<u><삭 제></u>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삭 제>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삭 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삭 제>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삭 제>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삭 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

<삭 제>

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
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
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삭 제>

<u>장애인(증명소지자)</u> 15. <u>담양군민(「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u>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7.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18. 그 밖의 군수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는 무료관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제2조(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입장료 면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u>	제7조(입장료 면제) ① “ <u>별표 3</u> ”-----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삭 제>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삭 제>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삭 제>

4.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삭 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삭 제>

6. 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삭 제>

7.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삭 제>

8. 미취학 영·유아 및 노인

<삭 제>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삭 제>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 조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삭 제>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삭 제>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 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 자 1명을 포함한다)	<삭 제>
18. <u>담양군민(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 군민으로 지정된 사람</u>	<삭 제>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삭 제>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	<삭 제>
21.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 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삭 제>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 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담양군 소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관람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4조(관람료면제) ① “별표 5”----- ----- -----.
1. 국민 및 그 수행하는 사람	<삭 제>

2. <u>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u>	<u><삭 제></u>
3.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u>	<u><삭 제></u>
4. <u>소쇄원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u>	<u><삭 제></u>
5.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u>	<u><삭 제></u>
6. <u>소쇄원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u>	<u><삭 제></u>
7. <u>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위해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수가 인솔하여 방문하는 사람</u>	<u><삭 제></u>
8. <u>미취학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u>	<u><삭 제></u>
9. <u>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u>	<u><삭 제></u>
10.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삭 제></u>
11.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u>	<u><삭 제></u>

12.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3.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4. 「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5.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6.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7. 「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삭 제>
18. 「 <u>장애인복지법</u> 」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삭 제>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조에 따른 수급자	<삭 제>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 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 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을 소 지한 사람	<삭 제>
21.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 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삭 제>
22. 담양군민(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 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삭 제>
23.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 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제13조(관람료 면제) ① “별표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

1. 국민 및 그 수행하는 사람

<삭 제>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
람

<삭 제>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삭 제>

4. 박물관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삭 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
문하는 사람

<삭 제>

6. 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삭 제>

7.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삭 제>

8.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
상 노인

<삭 제>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
람

<삭 제>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삭 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삭 제>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삭 제>

18. 담양군민(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삭 제>

사람)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 21.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 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22.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 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제5조(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입장료) 입장료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정하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제3조(입장료) ----- ----- -----

별표와 같다.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6. 담양군에 소재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7.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8. 미취학 영·유아 및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과 --.

제8조(입장료 면제) ① “별표 2”---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1.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2.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3. 「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4.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5.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16. 「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삭 제>
17. 「 <u>장애인복지법</u> 」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삭 제>

18. 담양군민(주민등록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 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삭 제>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삭 제>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

<삭 제>

21.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삭 제>

22.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